

2024년

취업형(시니어인턴십,취업알선형) 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01

취업형 사업의 이해

01

취업형 사업의 이해

하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개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셋.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안내



하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소개



설립일

2005년 12월

설립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임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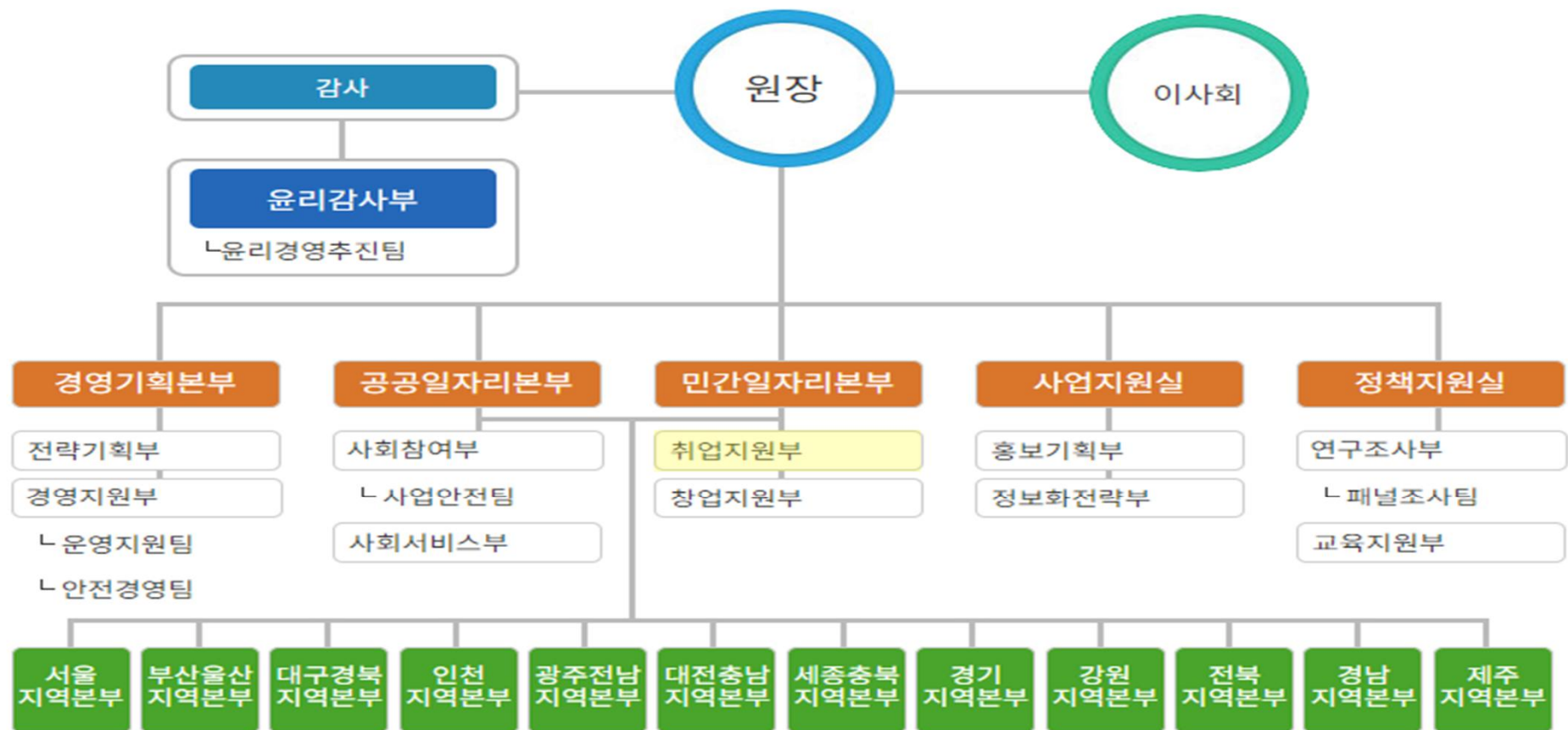
약 180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중양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하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개 [①기관소개]

조직현황: 3본부 2실 11부 12지역본부



하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포털사이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검색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과 소식 확인 가능

YOUTUBE: 매년 취업형 사업 설명회 영상 업로드 !



01

취업형 사업의 이해

하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개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셋.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안내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비영리법인, 기업협회등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4회 지원
: 1인당 최대 280만원(우측 표 참고)



2023년 55,000명
2024년 7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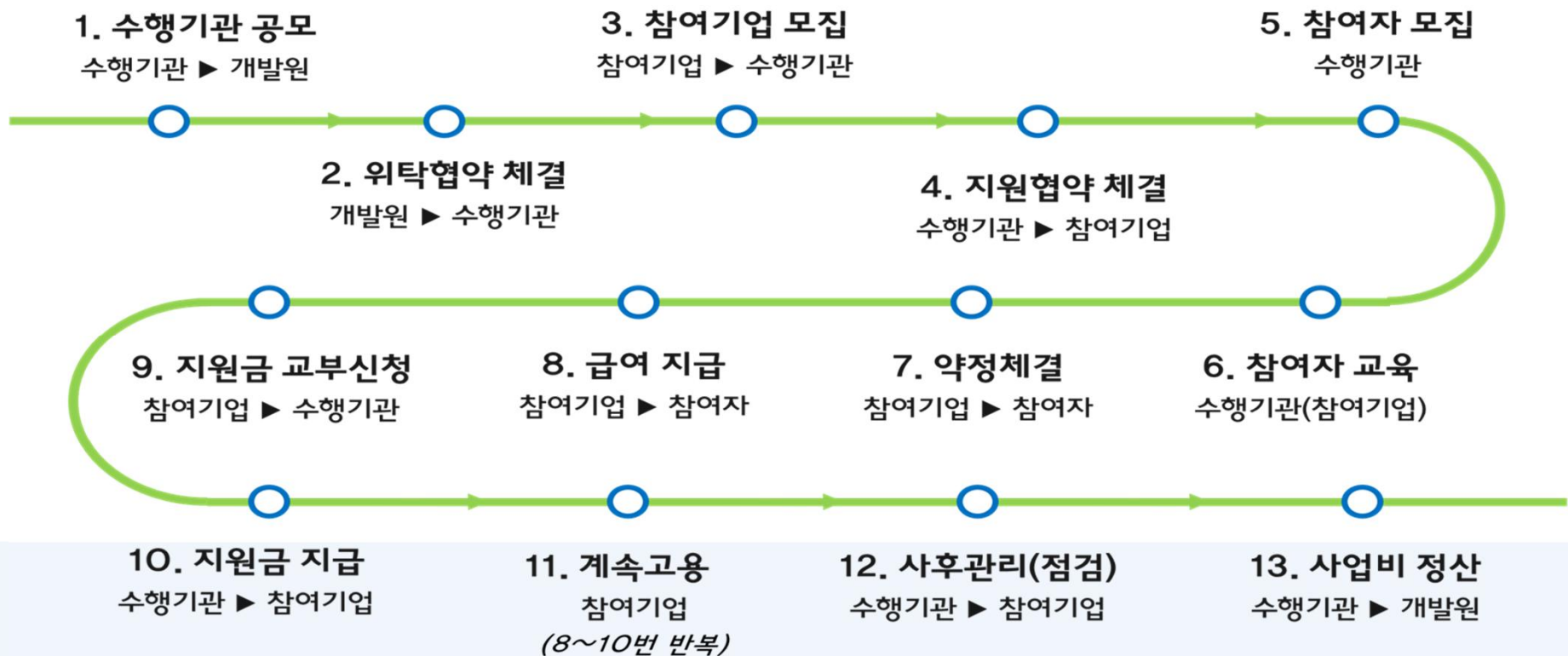
2023년 122,100백만원
2024년 155,400백만원

장기취업유지형

근로유지	지원내역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사업 절차]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수행기관 역할]



[수행기관]

[역할]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공모 위탁 받아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부터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의 역할 수행

[의무]

시니어인턴십은
100%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참여자격]

⊙ 참여기업은?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참여제외기업

- ✓ 3개월미만의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 필요시, 협약에 따라 가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 기간 종료된 경우 가능

-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 계속 고용 실적x
-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정판단 업종 또는 직종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참여자격]



⊙ 참여자는?

: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 교육 제한되는 경우, 참여기업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참여제외자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
- ✓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 취득 중인 자
-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 재참여
-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 등
- ✓ 인턴십 참여 직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국적 취득자는 참여 가능)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사업유형]

01. 일반형

- 60세 이상 자를 채용한 기업
- 인턴기간(1~3개월) 최대 월 4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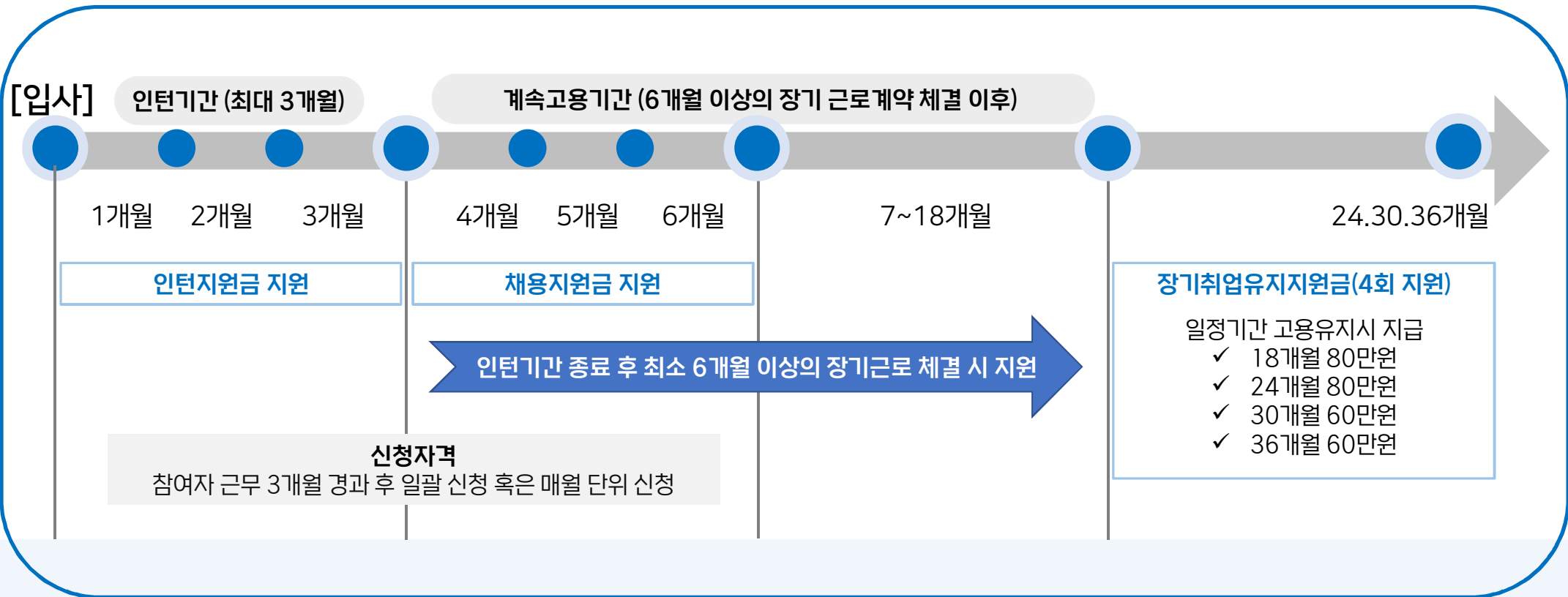
02.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 이상 자를 청년 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1인당 인건비 3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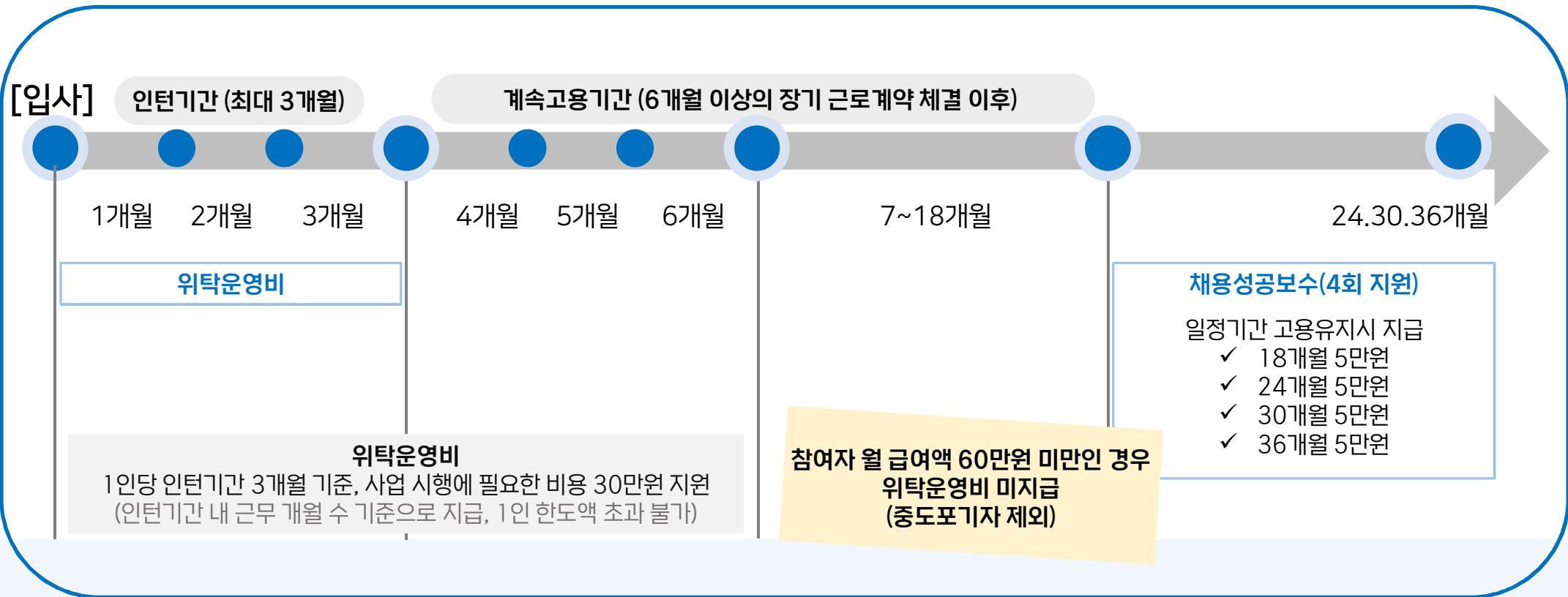
03. 장기취업유지형

- 시니어인턴(일반형,세대통합형)으로 일정기간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18·24개월 80만원, 30·36개월 60만원)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참여기업 지원]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수행기관 지원]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통합공모]

2024년 취업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사업 통합공모

[수행기관 자격요건]

-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②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위탁 노인취업지원기관(센터) 등
- ③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
- ④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⑤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 ⑥ 기업(직능별) 협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 ⑦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재지정기준]

최초배정량 달성(100%이상), 월평균급여(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대비 5% 이상), 통합공모수행 실적(인턴십 최초 배정량 대비 알선형 실적 40%이상) 필수(10월말실적기준)

(참여제외기관)

- 1) 과거 운영안내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탁계약해지 이력이 있는 수행기관.
- 2)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수행기관.
- 3)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관.
- 4)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1년 미만의 영리 목적 기관(개인사업자 포함)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제외 직종

[변경 전(2023년)]

참여가능직종(391개)

제외직종(59개)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형태 제외
- 정부 재정 지원 국가 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일자리 제외
- 파견직 참여 제외(단, 위탁이 아닌 직접 지원 시 심의를 통해 허용)

[변경 후(2024년)]

참여가능직종(391개)

제외직종(59개)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 제외
- 정부 재정 지원 국가 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일자리 제외
- 파견직 참여 제외(단, 위탁이 아닌 직접 지원 시 심의를 통해 허용)
- 일부 직종은 직업 예시까지

세분화하여 참여 가능 여부 관리

세분류 직업명		제외여부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조건부 제외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제외 (조건부 허용)

[참고] 인턴십 운영안내 부록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제외 직종

[참고. 부록-조건부허용 세부 규정]

<조건부 허용 세부 규정>

- ※ (0139) 관리소장은 ① 설비·안전 등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② 근무장소당 1인 배치 여부, ③ 정상 근로시간대 근무 여부(교대 또는 야간근무 금지)까지 3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
- ※ (5420) 경비원, (5611) 청소원, (5612) 환경미화원은 ① 수행기관 위탁 없이 심의를 통해 개발원 직접 운영, ②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용역이나 파견이 아닌 직고용, ③ 제한된 사업량('24년 3,000개) 이내 추진, ④ 기업지원금 50% 감액 지원까지 4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참여기업 모집

[변경 전(2023년)]

신설

[변경 후(2024년)]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대민사이트
(노인일자리 여기 등)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협약 체결, 실행계획 등록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기업 접수·모집 가능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급여 및 수당 지급

[변경 전(2023년)]

신설

[변경 후(2024년)]

참여자가 금융거래가 불가하여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 현금 지급 확인서 수령 및 증빙자료 필수 구비

※ 보수 현금 지급 확인서에 대한 증빙 자료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서류) 등 금융거래가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근로여건 보장

[변경 전(2023년)]

신설

[변경 후(2024년)]

(근무기간 준수)

수행기관은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기업이 약정기관(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퇴사 조치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참여자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인턴십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채용성공보수

[변경 전(2023년)]

신설

[변경 후(2024년)]

(지원금 신청)

채용성공보수는 대상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과 동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신청은 가능하나 사후신청은 불가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장취형 지원금

[변경 전(2023년)]

신설

[변경 후(2024년)]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장기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이 있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지원금 신청일자를 포함하여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2024년 주요개정(안)]

기업 및 기관 점검

[변경 전(2023년)]

신설

[변경 후(2024년)]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원은 주요 부정징후 패턴에 대한 조사를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

01

취업형 사업의 이해와 주요 개정사항

하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개

둘.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셋.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안내



셋.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안내

⊙ 취업알선형이란?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

⊙ 사업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4대보험가입사업장
비영리법인, 기업협회등



1인당최대 10만원
10일미만근로및 50만원미만급여 - 5만원
10일이상근로또는 50만원이상급여 - 10만원



2023년 68,000명
2024년 70,000명



2023년 4,840백만원
2024년 5,300백만원

셋.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안내

[사업 절차]



셋.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안내[참여자격]

⊙ 참여기업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참여제외기업

-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셋.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안내[참여자격]

⊙ 참여자는?

: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 자



⊙ 참여제외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등에 참여 중인 자

* 일시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취업알선형 참여자가 참여기업은 타부처 또는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령 가능

▶ 취업알선형 사업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는 참여 가능)

셋.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안내[수행기관 지원]

⊙ 위탁운영비

: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자 1인당 최대 10만원 위탁운영비 지급

⊙ 장기고용인센티브

: 참여자가 수행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 시
위탁운영비 총액 이내 1인 기준 3만원 이내 정산없이 집행 가능

위탁운영비

장기고용인센티브
위탁운영비 총액 내
1인 3만원 이내